교육부

2024년
대학혁신지원사업(일반재정지원) 기본계획

2024. 1.

교 육 부
(지역인재정책관)

목 차

Ⅰ. 추진배경 ····· 1

Ⅱ.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····· 2

Ⅲ. 2024 년 추진내용 ····· 5

1. 중점 추진방향 ····· 5

2. 세부 지원계획 ····· 6

3. 성과평가 계획 ····· 9

4. 추진체계 및 관리 ····· 14

Ⅳ. 기타 행정사항 ····· 17

Ⅴ. 향후 일정 ····· 17

[붙임] 포뮬러 교육여건 지표 정의 ····· 18

Ⅰ. 추진배경

1 고등교육의 대내·외 여건

□ 대학의 열악한 미래 투자 여력

○ (재정 여건 악화) 등록금 동결('09~),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 악화는 대학교육의 혁신에 불확실성을 야기

○ (국제수준 대비 투자 열악) 우리나라 고등교육 투자는 1인당 교육비 $12,225('20년 기준)로, 국가 경제 규모 대비 미래 투자가 매우 부족*

* OECD 평균 $18,105 대비 67%에 불과

□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맞는 인재양성 필요

○ (융합인재 양성 필요) 학문 간,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(Big Blur)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하고,

- 학생 전공이 입학 시 결정되어 졸업까지 이어지는 단선 구조 등 기존 교육체계로는 다양한 학문에 기반한 융합역량을 함양하기 어려운 상황

○ (산업계 요구 대응) 급속한 경제·산업 변화로 인한 인재 미스매치는 대학 스스로의 체질 개선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양성을 요구

※ '23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학교육의 경쟁사회 요구 부합 정도는 총 64개국 중 49위(전년대비 3단계 하락), 25~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

2 고등교육 혁신 지원의 필요성

□ 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체계의 질적 도약

○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별 자율 혁신은 다원화 사회에 부합하는 폭넓은 인재양성에 기여

□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

○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에게 희망 진로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,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

Ⅱ.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

1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

사업 목표

대학별 자율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으로
양질의 대학 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

↑

기본 방향

적정 규모화,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 추진 지원
지역 수요, 대학 역량 등에 따른 다양한 발전 전략 뒷받침

↑ ↑ ↑

세부 추진 전략

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

■ **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**
-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
- 사업비 집행 자율화
- 대학별 운영 성과와 인센티브와의 연계 강화
- 대학별 재정지원사업 자체 관리·평가 체계 구축

■ **대학별 교육혁신 및 적정규모화 촉진**
- 미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,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 지원
- 대학 적정규모화 실적 점검 및 인센티브 부여

■ **산업·사회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**
- 첨단분야 부처 협업 혁신인재양성
- 일반재정지원 연계 및 제도적 지원

↑ ↑ ↑

대학내 기반

■ **대학혁신지원사업(자율혁신계획)을 중심으로 한 사업 간 유기적 연계**
■ **대학 내 정부(중앙·지자체) 재정지원사업의 총괄 관리 체계 구축**

❖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**미래인재**를 **적시에 양성**하기 위한 **대학 혁신**이 고등교육의 당면 과제

❖ 학령인구 감소, 재정 악화 등 **대·내외적 환경 변화**는 **위기인 동시에**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**고등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**

☞ **안정적 재정지원**을 중심으로, **미래 인재양성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** 인재양성 시스템 체질 개선 추진

2 사업 개요

□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

사업유형	사업내용	비고
Ⅰ유형 (일반재정지원)	▸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(사립·국립대법인 등 117교) * 국립대학 36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지원('23~) ▸내용: 대학교육의 자율적 혁신 및 학생지원 강화 ▸예산: ('23) 8,057억 원 → ('24) 8,852억 원	자율혁신 계획을 통한 연계
Ⅱ유형 (부처 협업형 인재양성)	▸대상: 일반재정지원대학 중 선정대학 ▸내용: 부처 협업형 신산업 분야 혁신인재양성 ▸예산: ('23) 1,052.84억 원 → ('24) 1,187.95억 원	

※ Ⅱ유형은 별도 계획으로 안내

□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

○ (**기본 방향**) 대학별 **기 수립한 자율혁신계획**을 **대내외 여건 변화**를 고려하여 **수정·보완**

○ (**교육혁신 전략**) **학과 간 벽**을 허물고 **학생**들의 **전공선택권**을 **확대**하는 등 **미래융합형 인재**양성을 위한 **교육과정 혁신, 학생지원체계 고도화** 등 추진

※ (예시) 전공-취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학생 전공 자율 선택권 부여, 기초학문·신기술 분야 기초교양교육, 연계·융합전공 확대 등

○ (**결과 활용**) **교육혁신 성과**를 포함하여 대학별 **자체 성과관리 실적 등**을 **점검**하고 **인센티브 부여**

※ 평가보고서 접수 시 교육혁신 성과를 반영하여 제출하고,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확정 후 '24년 자율혁신계획 제출

3 주요 추진경과

□ ’22~’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**기본계획 수립·안내**(’22.2.4.)

□ ’22~’24년 **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제정**(’22.2.14.)

※ 기존 1주기(’19~’21)의 집행·관리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’22~’24년 집행·관리기준 마련

□ 대학별 ’22~’24년 **자율혁신계획**(사업계획서) 접수(’22.5.)

□ 대학의 **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**(’22~’25)에 따른 **적정규모화 지원금** 대학별 교부액 **확정·배분**(’22.9.)

□ ’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**기본계획 수립·안내**(’23.3.24.)

□ **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개정**(’23.5.19.)

※ 인건비는 총액의 10% 한도, 경상비는 25% 한도 내 편성 가능하도록 집행기준 개선

□ ’23년 대학혁신지원사업 **성과평가** 진행(’23.7.~8.)

※ 교육혁신전략(80%), 핵심교육성과(10%), 자체성과관리(10%) 평가

- (**교육혁신전략 평가**) **사회수요 변화**에 대응하여 대학별 여건에 맞게 **학사 및 제도**를 **유연화·융합화**하고, **학생의 전공 선택 및 진로 지원** 등 내실화 의지 평가

□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및 개편 관련 **의견수렴**(’23.11.~’24.1.)

※ 기획처장·입학처장 등 간담회, 정책연구안 대학 안내 및 의견수렴 등

- (주요의견)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등 **대학 교육혁신**을 위해서는 **충분한 준비기간**이 필요하므로, **대학별 여건**을 고려하여 **단계적 추진** 필요

Ⅲ. 2024년 추진내용

1 중점 추진방향

□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두터운 일반재정 지원

○ (**지원확대**) 대학의 **자율 혁신**을 위한 **포괄적 방식**의 **일반재정 지원 확대***

* 1교당 평균 지원 규모: 69억 원 → 75억 원

○ (**집행기준**) **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** 외 **별도 사업비 지침**을 통한 **규제는 최소화**하고 대학의 **실질적인 재정집행 자율성*** **제고**

* ① 인건비는 총액의 10% 한도, 경상비는 25% 한도 내 편성 가능 / ② 투입지표인 사업비 집행실적은 성과평가에서 제외

□ 대학의 여건에 맞는 과감한 교육혁신 지원

○ (**교육혁신 지원**)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, 교육과정 혁신, 지원체계 고도화 등의 **교육혁신 추진 대학**을 **인센티브**를 통해 지원

- **과감히 혁신**하는 **선도대학**을 발굴하여 **우수사례 확산**
- **대학별 자율 혁신 지원**을 위해 **성과공유회, 컨설팅** 등 실시

○ (**단계적 교육혁신**) 대학이 **여건**에 맞게 **단계적**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**절대평가**를 실시하고,

- **전체 대학**에 교육혁신 성과에 따른 **인센티브 지원**하되, **지역별 여건**(수도권-비수도권)을 고려한 **평가** 실시

□ 대학 부담 완화와 책무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 배분 개선

○ (**대학 부담 완화**) 대학 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**투입 중심 지표**는 **축소**하고, **핵심 교육여건**을 **중심**으로 **사업비 배분**

※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제외

○ (**책무성 강화**) **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수준**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**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**를 신설하여 **취약계층 학생 지원** 확대

2 세부 지원계획

1. 사업 개요

□ 지원기간 및 대상

○ (지원 기간) ’24.3.1.~’25.2.28.

○ (지원 대상) **일반재정지원대학 117교** (사립 114교, 국립대법인 2교, 공립 1교)

○ (지원 내용) 대학이 **자율 혁신**을 통해 **교육 · 연구 · 산학협력 · 평생교육** 등 총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**블록펀딩 방식**으로 지원

○ (지원 규모) **8,852억 원** ※ 사업관리운영비 32억 포함

< ’24년 사업비 현황 >

구분	’23년	’24년	증감
총 사업비	**8,057억 원**	**8,852억 원**	+795억 원
교당 평균 지원단가*	**68.4억 원**	**75.4억 원**	+7억 원

* 사업관리비 제외 대학지원금 기준

2. 사업비 배분

□ 기본 구조

○ (사업비 구분) 사업비 총액을 **포뮬러 사업비(50%)** 및 **성과평가 인센티브 금액(50%)**으로 **구분**하여 배분

○ (권역별 배분) **포뮬러 사업비 및 인센티브 금액을 권역별***로 ‘**학부 재학생 수**(50%)‘와 ’**학교 수**(50%)‘를 기준으로 배분

* 수도권 / 대구·경북·강원권 / 충청권 / 호남권 / 부산·울산·경남권

※ 포뮬러 사업비 및 인센티브 금액은 **권역별 배분 후**, 권역별 배분 금액 내에서 각각 포뮬러 배분 기준,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**학교별 배분**

< ’24년도 사업비 배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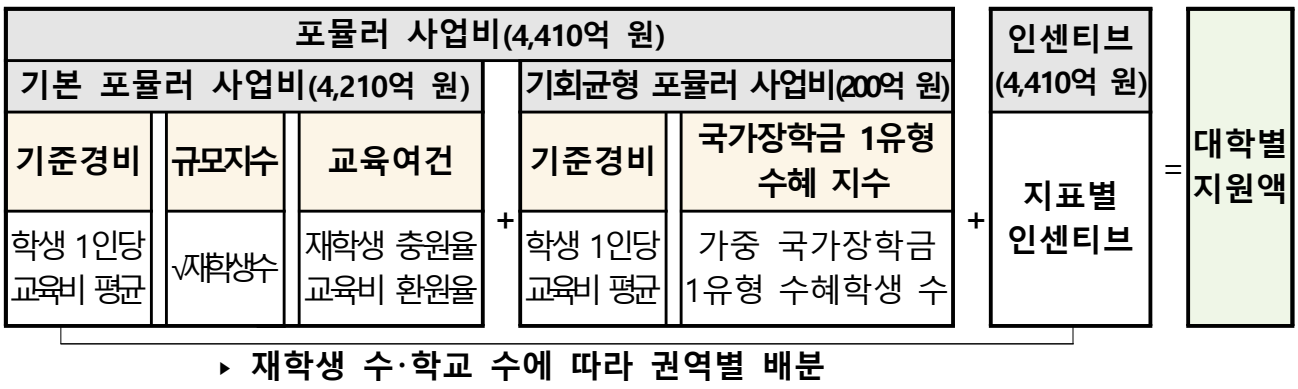

□ 포뮬러 배분

○ (포뮬러 구분) 포뮬러 사업비 총액을 **기본 포뮬러 사업비(4,210억원)**와 **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(200억원)**로 구분하여 배분

- (기본 포뮬러 배분 기준) 권역별 기본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**대학의 규모(재학생 수)**와 **교육여건**을 고려하여 배분

- (기회균형 포뮬러 배분 기준) 권역별 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 총액 규모 내에서 **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지수**를 고려하여 배분

구 분		내 용
기본 배분 지표	기준경비	■ **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**
	규모지수	■ **학부 재학생 수의 제곱근**
	교육여건	■ **재학생 충원율, 교육비 환원율을 표준화**(평균1, 표준편차0.4)**한 각 변환점수 합으로 교육여건 점수* 산출** * 교육여건 점수 = 재학생 충원율 변환점수 + 교육비 환원율 변환점수 지표별 변환점수 = 1+((지표별 점수값 − 지표별 평균값) / 지표별 표준편차 X 0.4) ※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.2점, 최고점 1.8점으로 설정(±2표준편차)
	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	■ **가중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 학생 수** = 기초·차상위 학생수×1.0 + 1구간 학생 수×0.9 + 2구간 학생 수 ×0.8 + …… + 8구간 학생 수×0.2

※ 기준경비, 규모지수, 교육여건은 ’23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

※ 국가장학금 1유형 수혜지수는 ’23년 한국장학재단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

□ 인센티브 배분(안)

○ (**성과평가**) **교육혁신 성과** 및 **'대학 자율혁신계획'**에 따른 **2차년도 사업추진 실적**(자체 성과관리 등)에 대하여 **성과평가** 실시

○ (**결과활용**) 각 권역별 **지원금**의 **50%**를 **성과평가 결과**와 **연계하여 인센티브**로 지급

3. 사업비 집행기준

□ 사업비 편성 방향

○ 대학에서 수립한 **자율혁신계획**에 따라 **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·연구·산학협력·평생교육 등 학생 지원 영역**을 **우선 편성**

- **기회균형 포뮬러 사업비**는 저소득층 등 **취약계층 학생 지원** 영역에 **우선 편성 권고**

○ 우선 편성 이후 대학이 필요로 하는 혁신지원사업 이외 **인건비** 및 **그 밖의 사업운영경비**를 **총액 한도 내 편성 가능**

※ 향후 대학 재정 여건 및 사업비 편성집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기준 보완 검토

□ 세부 집행기준

○ (**원칙**) 상위법령에 따른 집행기준 외에 **별도 사업비 지침**을 통한 규제(집행불가 항목)는 **최소화**하여 **대학의 자율성 제고**

○ (**인건비**)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인건비에 집행 가능(총액 한도 25%)하나, **국고 사업비를 통한 기존 교직원 임금 인상**은 **불가**

※ 기존 교직원의 일괄 임금 인상 및 명예퇴직금 등 목적으로는 활용 불가

○ (**그 밖의 사업운영경비**) 공과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**경상비성 경비**를 **10% 한도 내 편성 가능**

<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및 한도 >

비 목	집행불가 항목	총액 한도
교육·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-
실험 · 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		-
장학금	-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를 초과한 지원금	-
교육 · 연구 환경 개선비	- 건물의 **신축 투자 및 토지 매입 제한**	-
인건비	- 급여, 수당 등 통상 임금이 아닌 **명예퇴직금** - **기존 교직원의 임금 인상 목적** ※ 기존 교직원 인센티브는 총 사업비의 5% 이내로 제한	25%
그 밖의 사업운영경비	- 상위법령 및 학내 규정에 따라 집행	10%

3 성과평가 계획

□ 평가 개요

○ (**방향**) 대학이 **여건**에 맞게 **단계적**으로 **교육혁신**을 **추진**할 수 있도록 **대학별·지역별 여건**을 고려해 **각 대학의 성과**를 **평가**하고,

- **과감히 혁신**하는 **선도 대학**의 **우수 사례**를 발굴하여, **전체 대학**에 **확산**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(**대상/시기**) 일반재정지원대학 117개교 / ’24. 6~7월 중(예정)

□ 평가 지표 및 내용

○ 교육혁신 성과, 핵심 교육성과,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

< 평가영역 및 지표별 평가내용(안) >

영역	지표별 평가내용(배점)	비고
혁신 성과	**1. 교육혁신 성과(80)**	
	•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성과	정성지표 절대평가
핵심 교육성과	**2. 유지충원율(10)**	
	• 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	정량지표 표준점수
자체 성과관리	**3.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(10)**	
	•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학내 성과관리 실적	정성지표 절대평가

○ **혁신성과(정성지표)** **미래 융합형 인재** 양성을 위해 **대학별·지역별 여건**에 맞게 **인재양성체계**를 **혁신**하는 **성과 및 전략 평가**

- **학생**들의 **전공선택권**을 **확대**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**교육과정 혁신**, 학생 **지원체계 고도화** 등의 추진 성과 및 전략을 평가

※ **'23년 연차평가보고서**에 기술한 혁신계획의 **추진성과**를 토대로, **필요시** 기술한 내용 외의 **추진성과** 및 '25년까지의 **추진전략 제시 가능**

- 대학의 **교육혁신 추진성과**를 **중심**으로 **평가**하되, 향후 **혁신전략**의 **일정** 등이 **구체적**이고, **실현 가능**한 경우 **평가 시 고려** 가능

- **'23년** 기 제출한 **교육혁신전략**에 대한 **달성도**를 평가하여 **반영** 가능

< 교육혁신 성과 주요 내용>

	주요 내용(예시)	평가 주안점
교육 혁신	• **교육체제 개편** 및 **학사구조 유연화** 등 성과 ※ 기성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이 아닌, **지적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**을 **함양**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의 개편 • 전공의 벽을 넘는 **융합교육** 운영 • **기초학문** 등 활용한 **소양교육** 활성화 - 다양한 분야에 대한 **역량**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• **전공자율선택**을 위한 **모집단위 운영·개편** ※ 입학 이후 전공탐색을 거쳐 전공선택권 부여 - 모수 제외 학과의 제외 타당성 - 기준 차이로 정량 미반영된 전공선택권 확대 노력 - 기타 다양한 형태의 전공자율선택 노력 • 재학단계 **실질적 전공 선택권** 보장(전과, 복수전공 등)	• 일회성 지원이 아닌 학내 **체계 구축** 중점 평가 • **양적 요소**(수혜학생 규모, 운영 규모 및 비율 등) 고려
제도 기반	• **전공자율선택**을 뒷받침하는 **학내 제도 개선** - **유연한 학사 운영**을 위한 기반 구축 ※ (예) 전공 선택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교원·재정·공간 등 주기적 재조정, 학과와 상관없이 교수 선발·배치*, 교육과정 개편에 참여한 교원에 포인트 제공 및 연봉으로 연계 등 * (예) 단과대학 소속, Joint Appointment 등 - **학생 맞춤형 지도**를 위한 기반 구축 ※ (예) Academic Advisor의 맞춤형 교육 지원, 전담 지도교수 배정 등 - 기타 성공적 운영을 위한 대학 내 **자율 교육혁신** • 학생 **전공·진로 탐색** 및 **선택**을 위한 학생지원체계	• 혁신과제의 **적극성·도전성 등 난이도**, 학내 구성원 간 **협의** 등 평가

※ 지역 및 대학별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

○ **혁신성과(가산점)** 수도권대(51교)는 **'25학년도 모집단계 혁신성과**에 대해 **가점 부여**

※ 수도권대: '23년 정성평가 100점 → '24년 정성평가 100점 + **가점(최대 10점)**

- 모집단계 혁신 성과 **인정 유형**

(유형1)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(예: 자유전공학부 등) 후, 대학 내 모든 전공(보건의료, 사범계열 등 제외) 자율 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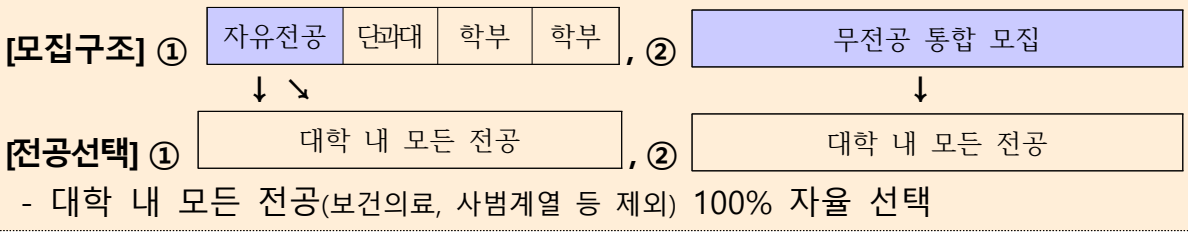

- 대학 내 모든 전공(보건의료, 사범계열 등 제외) 100% 자율 선택

(유형2)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 모집* 후,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 자율선택 또는 학과별 정원의 150% 이상 범위 내 전공 선택

* 계열·단과대 내 전공·학과를 **일부 분리모집**하는 경우도 **인정**
  - 다만, **혁신성·적절성** 등에 대해 **정성평가**에서 **반영**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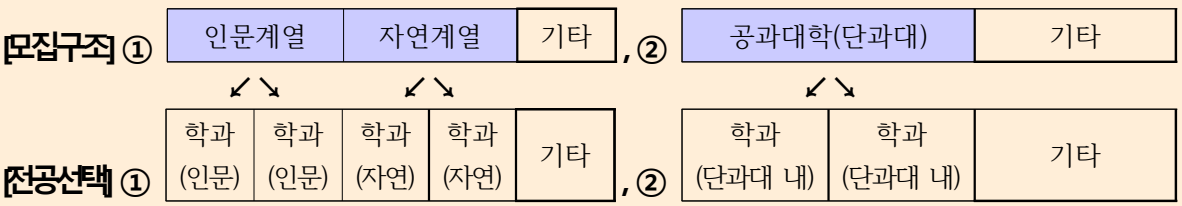

- 계열·단과대 내 모든 전공 100% 자율선택 또는 학과 정원의 150% 이상 범위 내 전공선택

- 모집단계 혁신 성과에 대한 **가점표**

		유형 1 + 유형 2 (단위: %, 이상~미만)					
		0~5	5~10	10~15	15~20	20~25	25~
유형 1	0~5	0	4점	5점	6점	7점	8점
	5~10	-	5점	6점	7점	8점	9점
	10~	-	-	7점	8점	9점	10점

※ 유형별 모집단계 혁신 비율 = $\frac{\text{해당 유형 모집인원(정원내)}}{\text{전체 모집인원(정원내)}}$

-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관련 **모수 산정 범위**

전공 유형	모수 포함 여부
정부 정원관리 전공 (보건의료계열, 사범계열)	**모수 제외**
각 부처 인재양성사업에 따른 전공, 희소·특수학과, 첨단학과, 계약학과, 재직자·성인학습자·특수교육대상자 모집인원 등	대학별 **자율**적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**10% 범위**에서 **모수 제외**
예체능계열, 종교계열	대학별 **자율**적 **모수 제외** ※ 10% 범위에 미포함

※ 유형1·2의 **전공선택 범위**에서 포함한 전공은 **모수**에서도 **포함**되어야함
(**모수**에서 **제외**한 **전공**은 유형1·2의 **전공선택 범위**에서 **제외**)

○ **핵심 교육성과** **유지충원율**의 핵심 요소인 **신입생·재학생 충원율** 지표 평가를 통해 **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**에 따른 **성과를 점검**

※ 신입생충원율(%) = [정원 내 입학자(명) / 정원 내 모집인원(명)] * 100

$$\text{재학생 충원율(\%)} = \left[\frac{\text{정원 내 재학생 수 + 조기졸업자 수}}{\text{정원 내 학생정원 - 학생모집 정지인원}} \right] * 100$$

* 충원율 관련 고려사항: 첨단학과 신증설, 편입학 선발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등 별도 보정
※ 대학정보공시 자료 및 대학별 제출자료 활용

○ **자체 성과관리** 대학의 자율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실적을 평가

- 자율 성과지표의 적절성·달성도, 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 구축·운영 및 자체평가 실적 등 평가

□ 평가방법 및 결과 활용

○ (**평가 방법**) 지표별 특성을 고려하여 **정성·정량지표**로 구분하고, **정성지표**는 **패널별 평가**, **정량지표**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**점수 산출**

- (**정성지표**) **서면검토 및 질의응답**을 통해 **지표별 절대평가**
- (**정량지표**)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고, 표준화(평균1, 표준편차 0.4)값을 인센티브 가중치로 활용

※ 지표별 변환 점수의 최저점 0.2점, 최고점 1.8점으로 설정(±2표준편차)

○ (**결과 산출**) **평가영역별**로 패널 내 순위 및 평점을 고려하여 **등급**을 **부여**하고, **최종 영역별 합산 점수(등급)는 미도출**

※ S(95점 이상), A(90점 이상 95점 미만), B(80점 이상 90점 미만), C(80점 미만)

○ (**인센티브**) 인센티브 지원금을 ①**권역별*** **배분** 후, ②**지표별**** **배점**을 고려하여 **배분**하고, ③**대학별 전체 포뮬러 및 성과평가 등급*****에 따라 **배분**

* 권역별로 '학부 재학생 수(50%)'와 '학교 수(50%)'를 기준으로 배분

** 교육혁신 성과(3,528억 원), 핵심 교육성과(441억 원), 자체 성과관리(441억 원)

*** 성과평가 등급별 인센티브 가중치: **A(1.3), B(1.0), C(0.7)**
- '교육혁신 성과' 영역은 **S등급(1.6)**까지 부여

※ 비수도권 4개 권역별 대학 중 학부 재학생 수 1만명 미만 대학은 '지역 강소대학'으로 보아 A등급 가중치는 1.5, S등급 가중치는 1.8로 상향 적용

< 평가 주요 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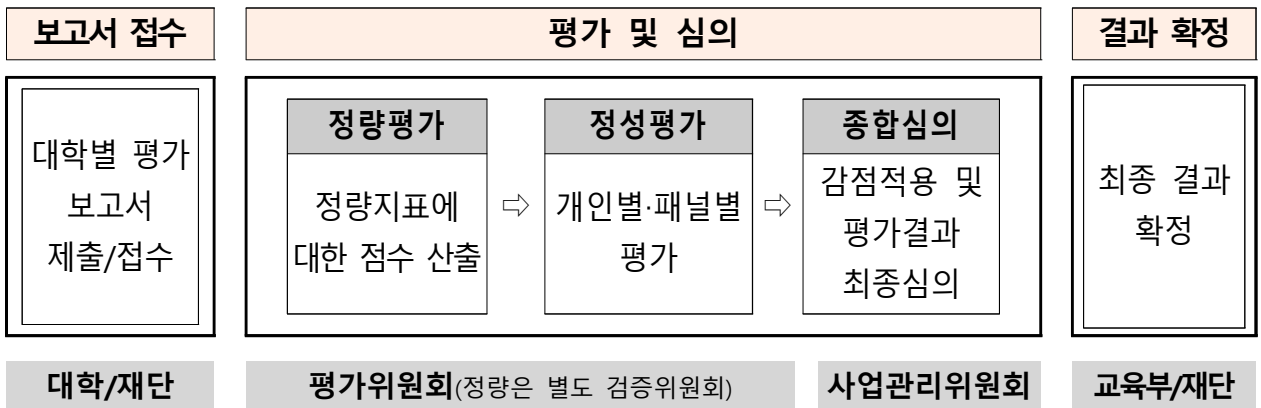

※ 절차·방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세부계획 안내 시 확정·안내 예정

※ 과거 재정지원사업(PRIME, CORE, WE-UP) 사후관리 불이행 시 교육혁신 성과 감점 적용

□ 교육혁신 선도대학 발굴

○ **교육혁신 성과** 영역에서 **S등급**을 받은 대학은 **선도대학**으로 지정하여, **우수 사례**로 적극 **활용**하고 **근로장학생 우선 배치** 등 혜택 부여 검토

○ 교육혁신 **우수 성과 사례**는 **전체 대학**에 **확산·공유**될 수 있도록 **백서 발간** 등을 통해 지원

- **교육혁신 성과** 영역에서 **A등급** 이상을 받은 대학 중 **대표적 우수 사례**가 있는 경우, 해당 대학 동의를 거쳐 **대학명**과 **관련 내용 공개**

4 추진체계 및 관리

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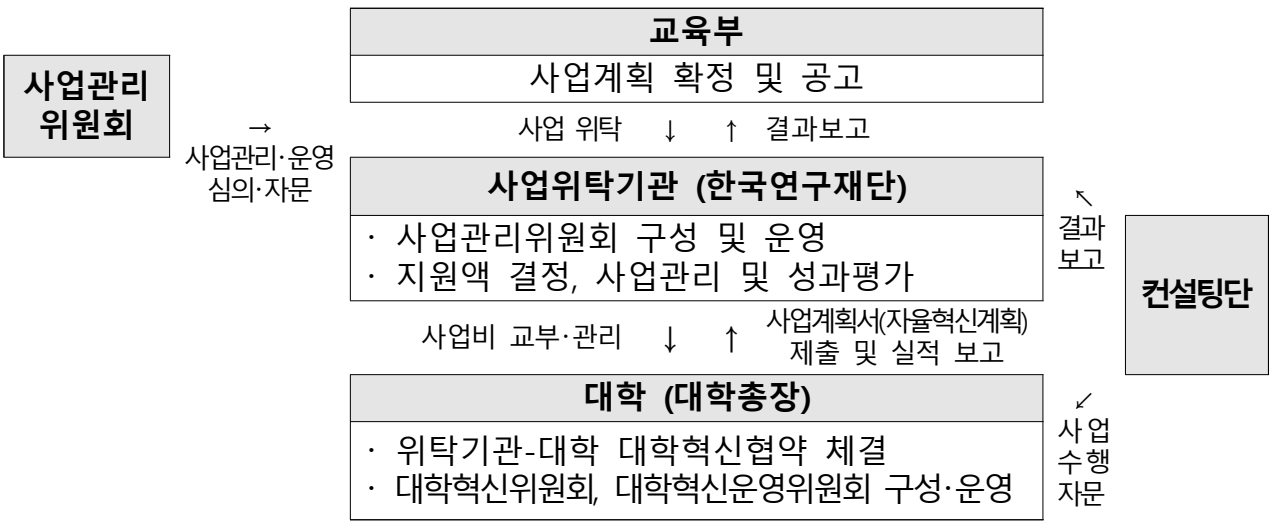

○ (**교육부**) 사업 **기본계획 수립·공고** 등 **사업 총괄**

○ (**사업위탁기관**) **한국연구재단**에서 사업 관리·운영 수행

-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분석,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·관리 및 컨설팅단 구성·운영 등

○ (**사업관리위원회**) **사업 관리·운영 자문, 지원대학별 지원금 확정,**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**주요사항 심의**

○ (**컨설팅단**) 대학별 **교육혁신 성과 및 전략, 자율혁신 계획, 재정투자 계획** 등에 대한 전문가 **검토·자문 지원**

※ 대학관계자, 연구원 등 고등교육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

- 대학별 성과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, **교육의 질 제고** 등을 위한 **대학 자문·권고** 및 **컨설팅** 지원

○ (**대학**) 지원대학의 장은 위탁기관과 **'대학혁신협약' 체결**

- 협약 기간 및 당사자,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, 사업비 관리·사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

2 사업관리

□ 협약 체결

○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**대학**의 **총장**은 **사업위탁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**하여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의 **책무성 확보**

□ 사업비 교부 및 집행

○ (**교부**) 지원예산은 **기관**(대학총장)에 **총액**(Block Grant)으로 **교부**하며 **교비회계**(대학회계) **내 별도 계정**을 설치하여 관리

○ (**집행**) **대학**에 **배분**된 **사업비**는 **'자율혁신계획'**에 **부합**하도록 **집행**

- 사업개시일('24.3.1.) 이후부터 **사업비 교부 전 대학 자체 재원**으로 **선**(先)**집행**한 예산은 사업비 교부 후 **대체 처리 가능**

○ (**점검**) **집행 실적 모니터링 시스템**을 구축하고, 부당집행 의심사례 발생 시 **재정집행 적절성 판단**을 위한 **심의 기구 운영**(사업위탁기관)

□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

○ (**정산**) **국고 지원금**은 **'25년 2월 말**까지 **집행 완료**하여야 함

※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

○ (**결과보고**) 3차년도 사업종료 시, **결과보고서**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를 **제출**하며, **성과평가 보고서**(성과목표 달성여부 포함)를 **첨부**하여 제출

□ 성과 관리 및 확산

○ (**자체 성과관리**) 자율혁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**학내 성과관리 전담기구*를 구축**하여 **자체 성과관리 추진**

* 예시: 성과지표 설정,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등을 위해 성과관리본부(IR) 구축

○ (**우수사례 확산**)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 등에 대한 **우수 사례**를 **발굴·확산**하기 위해 **성과공유회, 성과포럼** 등 개최, **백서 발간**

○ (**컨설팅**) **교육혁신** 추진과정에서의 **어려움** 등 **개선**을 위해 **컨설팅 지원**

□ 국고지원금 책무성 확보

○ '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·관리 매뉴얼'에 따라, 사업 목적 외 예산 사용, 횡령,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대학의 부정·비리 등의 경우 **사업관리위원회**가 **판단**하여 **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** 및 **사업비 환수** 등 가능 ※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

※ 위법·부당한 집행 사례 발견 시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포함한 패널티 부여

○ **사업비 삭감, 환수** 등에 따른 잔여 **사업비**는 **사업관리위원회**가 **판단**하여 **다른 지원대학**에 배분 가능

※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삭감·환수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경우,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재지급 가능

○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**지원금 삭감 등**이 있는 경우, 당초 **협약**한 **사업계획 이행**에 소요되는 **사업비**는 **대학 자체 부담**

Ⅳ. 기타 행정사항

□ 3차년도 사업비 확정 및 지급 일정

○ 대학별 **교육혁신전략 추진 및 성과평가 준비** 등 일정을 고려하여 **성과평가**를 실시하고 **사업비를 최종 확정·지급**

1차 사업비 지급 및 대학별 집행	**'24.3.~**
⇩	
성과평가 실시	**'24.6~7월**
⇩	
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	**'24.7~8월**
⇩	
집행완료 및 정산	**~'25.2월**

□ 유지충원율 등 점검 안내

○ '22~'24년 기본계획('22.2.)을 통해 안내한 **유지충원율 점검**(컨설팅, 적정규모화 권고 포함)은 **성과평가**로 **대체 적용**

○ 대학이 기 수립한 **'23~'25년 적정규모화 계획**은 **철저 이행**하여야 하며, **불이행 시 지원금 회수 등 페널티** 적용

Ⅴ. 향후 일정

○ 대학별 '24년 사업 협약 체결 및 1차 사업비 지급: '24.3월

○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성과평가 실시 : '24.6~7월

○ 사업비 확정 및 2차 사업비 지급: '24.7~8월

○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점검: '24.9월

❖ **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**

붙 임 **포뮬러 교육여건 지표 정의**

□ 교육여건 지표별 상세 기준

용어의 정의, 인정 기준 등은 **2023년 대학정보공시 지침서**를 준용하되, 일부 **상이한 부분**은 아래 각 지표별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

지표	산식
재학생 충원율	$\frac{\text{정원 내 재학생 수(명)}}{\text{학생 정원(명) - 학생 모집정지 인원(명)}} \times 100$ ※ 대학원 재학생 수 제외 ※ 학생정원 :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(대학정보공시 지침서 4-라-1 학생정원 작성지침 준용) ※ 학생모집정지인원 :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※ 재학생 충원율이 100% 초과 시에는 100%로 환산 ▸ 기준 : 각 학년도 4월 1일 기준 대학정보공시 자료 ▸ 공시항목 : 4-라-1. 재학생 충원율
교육비 환원율	$\frac{\text{총 교육비(원)}}{\text{등록금 수입총액(원)}} \times 100$ ※ 국립대 법인, 공립대는 117교 기준 표준화 ※ 사립대는 114교 기준 표준화 1) 총 교육비 - 국립대법인·공립대 : 대학회계(일반·법인회계 포함) + 발전기금회계 + 산학협력단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 - 사립대 : 교비회계 + 산학협력단회계 + 도서구입비 + 기계기구매입비(최근 3년 평균) 2) 등록금 수입총액 : '학부+대학원 등록금 수입 총액' 항목을 활용함 ▸ 기준 : 각 회계연도 결산 ▸ 공시항목 - 교육비 : 국립대법인·공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1. 학생 1인당 교육비, 사립대는 대학정보공시 9-나-2.. 학생 1인당 교육비 - 등록금 수입액 : 12-다-1. 장학금 수혜현황의 학비감면 준수 여부 항목의 등록금 수입 총액